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5월 1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5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03년5월14일)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 제안사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상 용어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조정함(안 제1조 내지 제14조)
- 감량의무화대상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3호)
-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정함(안제11조제5항 및 제6항)

3.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p>○ 개정안 제11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개정 문구는 법정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p>	<p>○ 동감을 하며 현행 조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봄.</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 요지

○ 불 임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제134호
의결연월일	2003.5.15 (제104회)

제안년월일 : 2003년 5월 14일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 내용중 법정 용어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수정코자함.

2. 주요골자

-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로 수정(안 제11조 제1항)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1항중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 ①시장은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p>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한다.</p>

[수정] (수정)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

제1조 내지 제14조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2조제5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를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로 하고, 동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중 “다만”을 “이 경우”로 하며,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4호중 “부산물은 재활용”을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으로 한다.

제7조제2호중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10조제2항중 “신축되는 공동주택에”를 “신축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로 하고, 제3항중 “법 제12조”를 “동조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제11조 제명중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를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류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하다}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u>음식물쓰레기</u>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음식물쓰레기</u>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규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장려사업장"(이하 "감량장려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호에서 정한 의무사업장 이외의 모든 중·소형 음식점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음식물류폐기물</p> <p>제1조(목적) 음식물류 <u>음식물류 폐기물</u></p> <p>제2조(정의)(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2. "<u>음식물류 폐기물</u>" 3. "<u>음식물류 폐기물</u>" 4. "<u>음식물류 폐기물</u>" 음식물류 폐기물 5. "<u>음식물류 폐기물</u>" 음식물류 폐기물 <u>음식물류 폐기물</u>을 가축의 먹이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6.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p> <p>7.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p>	<p>6.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p> <p>7.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 류 폐기물 ----- ----- -----.</p> <p>〈삭제〉</p>
<p>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은 부천시 전지역으로 한다.</p>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음식물류 폐기물 ----- -----.</p>
<p>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p> <p>1.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 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2.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을 -----.</p> <p>1. 음식물류 폐기물은 ----- ----- -----.</p> <p>2.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 물류폐기물을 ----- ----- -----.</p>

현행	개정안
<p>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생략) 4.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p>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p> <p>음식물류 폐기물을</p> <p>음식물류 폐기물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3. (현행과 같음) 4.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현행	개정안
<p>제6조의2(감량장려사업장의 <u>음식물쓰레기</u> 처리방법 등) 시장은 <u>음식물쓰레기</u>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감량장려사업장에 대하여도 제6조의 <u>음식물쓰레기</u> 감량의무사업장에 준하여 <u>음식물쓰레기</u>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6조의2(감량장려사업장의 <u>음식물류 폐기물</u> 처리방법 등) ----- <u>음식물류 폐기물</u> ----- ----- ----- <u>음식물류 폐기물</u> ----- -----<u>음식물류 폐기물</u>을 ----- -----.</p>
<p>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u>음식물쓰레기</u>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별지 제1호서식의 <u>음식물쓰레기</u>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 <u>음식물쓰레기</u>의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한 내용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p>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u>음식물류 폐기물</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u>음식물류 폐기물</u>----- ----- ----- -----.2. <u>음식물류 폐기물</u>----- ----- ----- ----- -----<u>1월말까지 시장에게</u> <u>제출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7조의2(음식물쓰레기 감량장려사업자의 준수사항) 감량장려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u>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을 추진하는 시책을 적극 실천하고 자체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u></p> <p>제8조(음식물쓰레기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u>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분리되어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3. <u>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u></p> <p><u>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u></p> <p>제7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장려사업자의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p>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이-----</p>

현행	개정안
<p>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u>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u>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②-----<u>음식물류 폐기물</u>-----</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시장은 <u>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u>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의 민간재활용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u>음식물류 폐기물</u>-----</p>
<p>⑤시장은 <u>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u>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⑤-----<u>음식물류 폐기물</u>-----</p>
<p>제9조(<u>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u>) ①<u>음식물쓰레기를</u> 담은 <u>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u>는 부천시폐기물에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p> <p>②<u>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u>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중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u>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u>는 수거와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제9조(<u>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u>)①<u>음식물류 폐기물</u>을-----<u>음식물류 폐기물</u>-----</p> <p>②<u>음식물류 폐기물</u>-----</p> <p>③<u>음식물류 폐기물</u>-----</p>

현행	개정안
<p>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로 하여금 <u>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및 운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u></p> <p>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p>③시장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u>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p>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u>음식물류 폐기물</u>----- ----- ----- ----- ----- ----- ②-----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음식물류 <u>폐기물</u>----- ----- <u>음식물류 폐기물</u>----- ----- ③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u>음식물류 폐기물</u>----- ----- ----- -----</p>
<p>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 ①시장은 <u>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u></p> <p>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u>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생략) 4. <u>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로 재이용하는 농·축산가</u> 5. <u>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u>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u>음식물류 폐기물</u>-----^{수거} <u>수집·운반·처리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음식물류 폐기물 -----<u>음식물류 폐기물</u>----- ----- 1. ~ 3.(현행과 같음) 4. <u>음식물류 폐기물</u>----- ----- 5. <u>음식물류 폐기물</u>----- -----</p>

현행	개정안
<p>③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오수 및 악취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 수집된 음식물쓰레기 또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재활용사업자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p> <p><신설></p>	<p>③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p> <p>④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p> <p>⑤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p> <p>②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 지역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하되 월 단위로 징수하며, 납기 개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p>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p> <p>②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p>

현행	개정안
<p>제12조의2(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대행) ①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징수·납부를 대행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대표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징수·납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2조의2(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대행)①-----음식물류 폐기물----- ----- ----- -----</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한 때에는 시장 또는 수집·운반·대행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p>	<p>②-----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p>
<p>제12조의3(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시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한 때에는 수수료를 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집·운반·처리한 때에는 이를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p>	<p>제12조의3(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등)-----음식물류 폐기물을----- ----- ----- -----</p>
<p>제12조의4(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면제) 시장 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5리터 용량 기준으로 20리터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의4(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면제)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p>
<p>1. ~ 3.(생략)</p>	<p>1. ~ 3.(현행과 같음)</p>

